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목)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나. 회부일자 : 2015. 9. 8(화)

다. 상정일자 : 2015. 9. 14(월)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관련 규칙의 폐지와 조례 신설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 목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